동물등록 [] 신청서 [] 변경신고서

※ 아래의 신청서(신고서)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(신고인)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\ * /	동물등록번호란과	버거기하다	버거시그	4 L - H - L	115LAI	01	HOVILL	져스니티	
**	공물등속면 오단파	면성사양단근	면정인포 /	시 애딩	사양이	7.7	경구에만	식급니다.	

(앞쪽)

※ 중출등측반오는	14 인상시	8원도 건	3건포 시 애	9 7/8/	/I // T	- 8TMI	그 먹답이다.	•			(표국)
접수번호			접수일	۷			처리일			처리기긴	<u>l</u> 10일
	성명(법인명)		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)					<u>호</u>	
신청인 (신고인)	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※ 현재 거주지가 주소와 다를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.										
	※ 현재	거수지?	가 수소와 	다들 경	경우 	현재 거	수지 수소	들 함께 기	기재합니다	구 .	
동물관리자 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)	성명		직위		전:	화번호		관리장소	:(주소)		
	동물등	록번호									
동물	이름	품종	털색깔	성빌 암	별 수	중성화 여 부	_	생일	취득	투일	특이사항
		구분				변	경 전			변경	후
		소유지	:}								
변경사항	주소										
20 10		전화번									
	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동물등록번호			의							
	기타 []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[등록대상·	동물의 사당	망 [] 등	 록대상동물	음의 분실 :	후 회수 [] 기타
변경사유 발생	생일										
등록대상동물	분실 5	또는 사망	방 장소								
등록대상동물	분실 5	또는 사망	방 사유								
「동물보호법 경)을 신청(신			제2항 및 [ት은 법	시행	l규칙 제	8조제1항	및 제9조제	제2항에 [[나라 위와	같이 동물등록(변
								년		월	일
						Ź	···청인(신	고인)			(서명 또는 인)
(시장·군	수·구	청장)	귀하								

		수수료				
첨부서류	1. 동물등록증(변경신고 시) 2.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	신규,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	변경			
61711	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	1.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: 1만원 2.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: 3천원 3. 등록인식표의 부착: 3천원	무료			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개인인 경우: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(2. 법인인 경우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	경우: 주민틍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경우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		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[동의]

- 1.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(신고인)의 정보와 신청(신고)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 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 - 신청인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
- 2. 유기·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1.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,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 - 가. 소유자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합니다)
 - 나.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(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말합니다)
 - 다.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
 - 라.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,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
 - 마.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
- 2.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 공고됩니다.
- 3.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,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- 4.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,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